

保健看護事業 現況과 問題點

國立保健院 保健看護科 金永秀

1. 定義

保健看護란 看護事業의 한 特殊分野로써 公중보건에 필요한 看護技術과 社會扶助(social assistance)의 한 분야를 포함하는 것으로써 질병 예방(prevention of disease), 전강 증진(promotion of health),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환경적인 제조건의 개선과 해결로써 正常人間生活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目的을 둔 公중보건사업의 한 分野를 말하니 (註 1) 保健看護員이란 自己가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적인 배두리안에서 기초와 전문보건간호교육을 받은 者로서 患者看護, 疾病豫防, 保健增進을 爲한 일을 하는 公중보건 팀의 一員이다. (註 2) 따라서 保健看護員은 保健所, 學校, 產業場 其他 保健, 醫療機關에서 일하는 者로서 事業場所는 保健所, 家庭, 地域社會이다. 이런 點에서 保健所, 保健看護員, 看護教師, 產業場看護員에 關한 現況과 問題點을 같이 다루게 됨을 먼저 말해둔

다.

I. 保健所에 근무하는 保健看護員(Public Health Nurse working in the Health Center)

가. 現況

1) 全國 保健所와 保健看護員數 保健所法(1962. 9. 24 改正) 第二條에 ① 保健所는 서울특별시와 市, 郡에 설치한다. ② 전항의 보건소는 서울 특별시와 區를 설치하고 있고, 市에 있어서는 區마다 1個所 其他的 市와 郡에 있어서는 市, 郡마다 1個所로 한다(註 3) 라고 기재되어 있음과 같이 서울특별시에 9個保健所, 地方에 180個所, 모두 합하여 189個의 保健所가 全國에 배치 되여 있다. (1965. 5. 31현재) 1965 年度 全國의 人口는 28,647,176 이다. (註 4) 그리고 현직에 종사하는 保健看護員의 數는 全體保健看護員이 476 名이고 가족계획 요원이 723명이며 모두 합한 數는 1,199명이다. 시, 도별, 인구, 보건소, 보건간호원과 인구비례는 제 1표

保健看護員의 需給調整에 關한 調査

제 1 표

(保健所 看護員)

1966. 4. 15. 現在

市 道	人 口	全 國	保健看護員現況					計	
			一般保健看護員		家族計劃指導員				
			保健所數	보건소수	간호원수	보건소수	간호원수		
全 國	28,647,176	189	185	476	189	723	1,199		
서울특별시	3,470,880	9	9	109	9	99	208		
부산시	1,419,808	6	6	15	6	42	57		
경기도	2,984,374	23	23	45	23	79	124		
강원도	1,771,035	19	18	25	19	61	86		
충 북	1,537,250	12	12	36	12	38	74		
충 남	2,899,838	17	17	75	17	58	133		
전 북	2,516,528	16	16	28	16	53	81		
전 남	4,013,011	25	23	41	25	86	127		
경 북	4,479,614	33	32	48	33	122	160		
경 남	3,228,433	26	26	48	26	85	133		
제 주	326,405	3	3	6	3	10	16		
保健看護員과 人口 비례(보건간호원 1人에 해당되는 인구)		保健看護員의 必要數(人口 10,000에 보건 간호원 1인의 비율)	保健看護員의 不足數	職種別 保健看護員의 不足數, (보건간호원의 총 부족수 11,660명 중에서)		保健看護員의 不足數, (보건간호원의 총 부족수 11,660명 중에서)			
(1966. 4. 現在)				보건 간호감독관(市道) 장(係)	보건 간호과(市道) 장(係)	보건 간호원			
全 國	23,892	2,859	1,660	42 명	189 명	1,429			
서울특별시	16,687	347	139	3(3보건소 에 1人)	9 1보건소 에(1人)	127			
부산시	24,909	142	85	2(")	6(")	77			
경기도	24,068	298	174	5(5보건소 에1人)	23(")	146			
강원도	20,593	177	91	4 " "	19 "	68			
충 북	20,774	154	80	3 " "	12 "	65			
충 남	21,803	290	157	4 " "	17 "	136			
전 북	31,068	252	171	3 " "	16 "	152			
전 남	31,599	401	274	5 " "	25 "	244			
경 북	28,800	448	288	7 " "	33 "	248			
경 남	24,274	323	190	5 " "	26 "	159			
제 주	20,400	33	17	1 " "	3 "	13			

※ (1) 1965. 년말 상주 인구통계 경제기획원, 1965.

(2) 1965. 9월 말 現在, 國立保健院保健看護員調査

(3) 1966. 4. 31. 保社部母子保健課 제공

와 같다.

2) 保健看護의 행정체계

서울특별시 :

시장↑보사국장→보건소 소장

보건지도과장
위생과장
방역과장
서무과장

※ 보건지도과에는 보건계장(chief nurse)인 보건간호원이 있고 방역과에는 결핵관리 간호원(결핵협회서 채용)이 있다. chief nurse는 같은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결핵관리 간호원을 직접 감독할 수 없다. (행정적인 면에서)

지방 :

내부부장관—차관—지방국장—부
산시장 또는 도지사—군수—

보건소소장
|

보자보건(係)(보건간호원)
위생
서무
약제
보건(보건간호)

※ 지방보건소는 行政上의 誤나 係의 구성을 없고 事業上으로 각각 다른 “係”的 형태를 가지나 各道마다同一하지 않다. 大部分의 지방보건소에는 일반 사무적인 보건체장 팀에 보건간호원이 있다.

3) 保健看護事業의 種類

保健看護事業은 대체적으로 全般

的 看護事業 (generalized public health nursing)과 特殊保健看護事業 (specialized public health nursing)의 둘로 나누는다. (註 5)

전자는 한 사람의 보건간호원이 전호업무중 특수분야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성보건, 婦·幼兒보건, 전염병관리, 가족계획, 기타 등을 다 맡아서, 가족전체의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고 후자는 모자보건 또는 가족계획 결핵관리 등의 일 등에서 한 특수분야에만 치중해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양자가 다 長短點을 소유하나 近代의 여러 先進國에서 그 효과를 인정하고 많이 쓰여지는 것이 generalized public health nursing이다. 공중보건 사업은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은 물론 가족 나아가서는 지역민 全部가 다 포함되는 것이므로 한 특정한 인구만을 대상으로 일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복동 이집 할아버지가 결핵환자이고 어머니가 일부, 동생이 영·유아일 때 오랜시간이 걸려 찾아간 가정방문을 하는 결핵판티요원이 할아버지에게 필요한 간호와 보건지도만 하고 그집 가정방문을 마치고 모성보건을 맡은 간호원, 영·유아 보건간호를 맡은 간호원이 모두 그러하다면 한 집에 세 간호원이 각각 다른 목적으로 방문하게 되는 고로 정말로 비싼 가정방문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generalized public health nursing은 전

기한 바와같이 가족 전체의 건강판리를 할수있고 따라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한다는點에서 제일 효과적인 보건간호사업의 한 방법이라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 볼 것 같으면 전반 보건간호원, 가족계획지도원, 결핵관리요원 등으로 각각 분산된 사업을 하여 효과적인 전반 보건간호사업 보다는 특수보건간호사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보는편이 타당할줄안다.

나. 問題點

첫째 法的으로 認定된 保健看護員의 직위부활이 시급하다. 現在 우리나라에서는 保健看護員의 職種이 法的으로 認定되지 않아 2,000여명(양호교사 포함)이 넘는 보건간호원이 행정과 실무에 막대한 곤란을 당하고 있다. 외국의例를 볼것 같으면 보건간호원을 면허제로 하거나 또는 자격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日本과 같이 면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간호원 면허 소지자로서 특정한 보건간호 전문교육을(최저 1년) 필한 다음 보건간호원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비로서 자격있는 보건간호원으로서 일하게 되며 비율인간호사자격증제도를 채택하는 나라에서는 간호원 면허증 소지자가 특정한 보건간호 전문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자격있는 보건간호원으로서 일할수 있게 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도 前記한 제도中 어느 한가지 方法을 채

택하여 法的으로 認定된 보건간호원의 직위를 확보하여야겠다.

예안: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업자 종별에 나누어진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원, 간호원을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원, 임상간호원, 보건간호원으로 개정하고 특정한 보건간호 전문교육을 필한 자에게 정부는 保健看護員·資格證을 부여토록 할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건간호원은 보건소간호원, 산업보건간호원, 양호교사가 다 포함된다. 즉 보건간호원의 자격증만 있으면 上記한 3個 分野中 어디서나 일할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保健看護員의 행정체계 강화이다.

1) 保社部 看護事業課: 全國看護事業의 열쇠를 가진곳이 本 看護事業課라고 하겠다. 여기서 이루워지는 모든계획과 실천여하에 따라 全國의 看護事業이 좌우된다. 이렇게 벼친 사명을 떳 看護事業課에 각 特殊分野別로 보다 효과적인 사업을 하기 爲하여서는 간호사업과장을 적극 협조할수있는 임상간호, 보건간호, 간호교육의 전문가가 각각 1명씩 배치 되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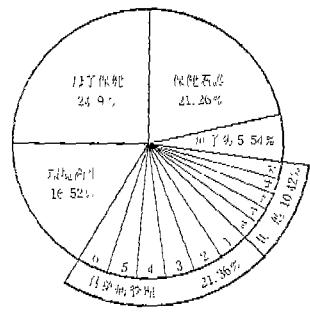
2) 各保健所에 保健看護課증설 (中央一課, 地方一係)

먼저 都市保健所와 農村保健所의事業量의 比重을 살펴본다면 都市型保健所에서는 全事業中 保健看護事業이 約 21.2%를 차지하고 農村에

서는 約 26.2%를 차지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保健所에서 근무하는 保健看護員의 數는 全 保健所 職員의 半數 혹은 그 以上을 차지한다. 여기서 保健看護事業이 重要하다는 點을 다시 강조하지 않더라도 前記한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한다면 전 보건간호업무를 맡아서 계획하고 所內의 全看護員들을 감독, 관리할 수 있는 保健看護課(係)를 설치하고 chief public health nurse로써 활약할 수 있는 職位를 만들어 주워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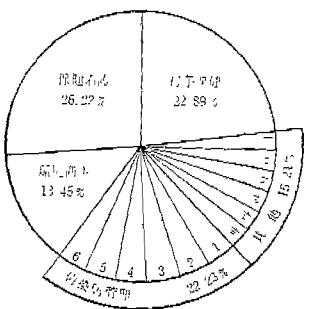
第 2 表 · (註 6)
都市保健所의 事業量比重



가. 학교보건	1.85%
나. 산업보건	1.85%
다. 농 기	2.06%
라. 의약사무	1.4%
마. 구강보건	3.34%

1. 드라코마	0.12%
2. 나 병	0.15%
3. 기생충	1.15%
4. 성병관리	5.2%
5. 질병 ✕	9.75%
6. 급성전염병	4.99%

農村保健所의 事業量比重



가. 구로사업	2.3%
나. 구강보건	3.6%
다. 통 계	1.95%
라. 학교보건	1.71%
마. 의약사무	0.43%
바. 서 목	5.3%

1. 드라코마	0.48%
2. 나 병	0.16%
3. 성병관리	1.21%
4. 기생충 ✕	1.65%
5. 결핵관리	8.64%
6. 급성전염병	10.09%

3) 감독보건간호관 배치 : 현재 전국의 189 個 保健所에 1,000 名이 넘는 保健看護員이 있어도 그 실무를 직접 감독할 수 있는 감독보건간호관은 한 사람도 없다. 이상적인 감독관과 보건간호원의 비율은 1:10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하면 보건간호원 현원에 필요한 감독보건간호관의 필요수만 하더라도 100명이 넘게 된다.

예안 : 서울특별시, 부산시에는 시보건국 보건과내에 감독보건간호관을 (案 : 每 3 保健所에 1 人式) 배치하고 각道에는 道保健課에 (案 : 每 5 保健所에 1 人式) 배치토록하여 자기 말은 보건소를 순회하여 보건간호과장은 직접 감독하고 보건간호의 난문제 조사와 연구 및 그 해결에 힘쓰도록 하여 보건간호사업의 질적인 향상에 힘쓸 것이다. (단 감독보건간호원은 보건소의 보건간호과장과 동급 혹은 더 높은급수라야 한다.) 정부가 주관하는 1 年의 보건간호 전문교육 과정이 앞으로 생긴다면 여기서 배출된 자를 감독보건간호관으로 쓰면 될 것이다. (감독보건간호원 배치안은 제1표를 참조)

셋째는 보건간호원의 수급조정문제이다. 국제 기준에 의한 보건간호원과 인구의 비율은 1:5000이다. 환연한다면人口 200,000이 사는 서울市 中區保健所에는 40명의 보건간호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 사정으로 볼 것 같으면交通의 不便, 일개 保健所가 넓은지

역을 對象으로 많은 人口를 관할한다는點, 경제수준 및 교육정도가 낮으므로 保健看護의 일이 더 많은 실정이므로 사실상 · 歐, 美 先進國보다 더 많은 보건간호원의 數가 확보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2,800萬이 넘는 인구에 保健看護員이 1,199名밖에 안되어 한사람이 2 萬 내지 3 萬名의 人口를 對象으로 일을 해야하는 실정이며 保健看護員의 대부분을 느낀다. 보건 간호사업 나아가서는 공중보건사업의 質과 量(quality & quantity)을 높이기 위하여 保健看護員의 인원이 대폭 확보되어야 한다. 現 우리나라에서 보건간호원 1 명에 人口 10,000 名의 비율로 쳐도 2,869 명의 public health nurse 가 필요하고 부족수는 1,160 名이나 보건간호원의 需給調整은 이러한 여러點을 고려하여 정부가 年次的으로 계획하여야 될 줄안다.

넷째는 保健看護 專門敎育機關의 확보이다. 現在 全國의 保健所에서 근무하는 간호원의 대부분이 그들의 看護學校 課程에서 保健看護學 및 公衆保健에 對한 기초敎育이 불충분하였다. 그래서 public health nurse 로써의 맑은 임무의 限界를 充分히理解치 못하여 자기의 책임을 다 할 수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難問題를 해결하기 爲하여 1963 年부터 國立保健院 調査訓練部에서는 WHO/UNICEF의 협조를 얻어 全國保健所에서 現職에 있는 P. H. N. 을

對象으로 3個月間의 In-service training을 실시하여 1966年 3月末까지 約 470名에 달하는 保健看護員이 保健看護専門敎育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In-service training이니만큼 保健看護 기초교육을 충분히 다룰수는 없는일이다. In-service training 과정은 보건간호 실무에서 일어나는 難問題들을 찾아내고, 이에 對한 해결방법을 연구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보건간호 전문교육을(최저 1년) 다룰수 있는 교육과정이 설치되어야 하고 이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보건간호원 자격증을 부여해야 한다.

다섯째는 간호교육에 보건간호 기초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문교부의 교과기준에 정해진 시간대로의 保健看護學을 가르치지 못하는 看護學校가 많으며 또한 保健看護學을 담당할 자격있는 강사도 不足한 것이 사실이다. 문교부에서는 각 간호 학교의 보건간호 기초교육에 대한 curriculum을 조사평가 하여 기준에 도달치 못하는 학교를 엄격히 조치하도록 할 것이며 좀더 實務에 가까운 方向으로敎育시키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간호대학과정에 보건간호학을 통합시켜 4년제 대학졸업을 한자는 간호원국가고시에 합격함과 동시에 자격있는 보건간호원으로 인정할 것이다.

여섯째는 보건간호원의 활동을 전반간호사업(generalized public health nursing)에 치중도록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같이 現 우리나라 보건소에서는 보건간호원, 가족계획요원 결핵관리요원 등으로 각각 특수 보건간호사업을 하고있는 실정이며 효과 있는 전반간호 사업을 놓하고 있다. “가족계획요원”도 “보건간호원”이라 칭하고 각자가 다 가족전체 건강관리를 할수있는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즉 특수보건 간호사업을 점차적으로 전반보건간호 사업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일곱째는 지방보건소에서 예방사업을 더 활발히 하도록 할 것이다. 현 실정에 의하면 지방에 있는 보건간호원의 대부분이 치료사업에만 열중하고 있고 공중보건사업의 중요한 일분야인 모자보건사업 등 예방사업을 거의 무시하고 있는 상태여서 곤란을 느낀다. 물론 우리나라 실정 특히 農村保健所에서는 治療事業을 전연 무시할수는 없지만 예방사업을 주로한 public health nursing service를 하여야겠다. 이려기 위해서는 지방보건소에서 수입을 올려야 한다는 點에 관한 연구가 크게 이루어져야 될 줄안다.

마지막으로 보건간호원의 대우개선이다. 보건간호원의 맡은바 일이 광범하고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우문제가 너무 빈약하다. 임상간호원이 몇몇 患者를 對象으로 일 할때 保健看護員은 個人과 家族 地域民을 對象으로 일하며 必要

에 따라서는 도움을 要求하지 않는
자까지 돌보아 주어야 하며 임상간
호원이 限定位된 地域인 病院內에서
근무할 때 保健看護員은 所內에서는
勿論 가정방문 지역방문으로 바깥 활
동이 하루 일과의 半 혹은 그 이상을
차지한다. 그리고 오고가며 드는 교
통비는 個人이 충당해야 하는 경우
가 많다 개인이 충당하지 못할 때는
가정 혹은 지역방문은 전폐되고 마다.
대부분의 임상간호원은 근무하는 기
관에서 宿·食이 제공되지만 보건간
호원은 그러하질 못하다. 간호원전체
(임상 보건간호 기타분야 포함)의 대
우기선이 시급한 것은 共和의 사실이
다. 그러나 자격기준(교육년차)과 업
무량을 고려해서 보건간호원들을 爲
한 특별수당을 책정하여 우선 임상
간호원과 같은 정도의 대우나마 해주
길 바란다. 농촌보건사업의 質과 量
을 높이기 爲하여는 농촌에서 일하
는 보건간호원에게 보다 넓은 대우
를 하여 농촌일꾼들이 생활에 위협
을 느끼지 않아야 都會地로 向한 一
片丹心이 가지게 될 줄 안다.

養護教師 (School Nurse)

가. 現況

- 1) 全國學校 및 養護教師의 數는
제 3표와 같다.
- 2) 養護教師 關係 法令
교육시행령(개정 1963. 12. 16-각령
1738호) 제 2절 국민학교 제 46조에
의하면 18학급 이상의 國民학교에는

양호교사 1人이상을 두어야한다. 무
의총에 있어서는 18학급 미만의 경
우에는 양호교사 1人을 둘수있다.
제 48조—중학교와 제 51조—고등학
교는 정원외에 양호교사를 둘수있다.
제 53조 대학—정원외에 양호교사를
1人둔다(註 7)라고 명시되어 있다.

나. 問題點

첫째는 양호교사의 수급조정 문제
이다. 제 3표와 같이 全國의 國民學
校총수는 4,824인데 그중 18학급이
상인 학교가 1,112학교이다. 문교
부령에 의하면 18학급 이상인 학교
에는 양호교사를 1명씩 둔다고 했는
데 현재 국민학교 양호교사의 정원
은 全國에 847명이고 혼원은 829명
이다. 나머지 283학교에도 양호교
사를 1명씩 더 늘여야 할 것이다. 중
고등·대학교의 총수는 全國에 1,97
1이다. 그런데 양호교사 정원은 한
사람도 없다. 중·고등·대학교 학
교보건을 위한 양호교사가 책정되어
야겠다.

둘째는 地方(道別)에 學生健康管
理所(school health center)가 설치
되어야 한다는 點이다. 서울특별시에
는 대부분의 국민학교에 양호교사
가 배치되어 있어도 학교건강관리
소가 있고 (東大門 國民學校) 18명
의 醫師가 있어서 이를 각자가 몇몇
학교를 달아서 정기적으로 순회하면
서 학동의 건강진찰과 검사를하고 부
분적인 치료사업을 한다. 전국에 18
학급 이하인 국민학교수가 3811이나

전국학교 및 양호교사수

1965. 3. 31. 현재

문교부 체육과

시 도	학교 수 (국민교)			양호교사 수			비 고
	18학급 o) 상 부 의 지 의 역 지	17학급이하 의 의 역 지	계 정 교 교	원 원 국민교 교	현 원 국민교 교	총 고	
전국	1,112	2,345	1,467	4,924	847	829	89 양호교사
서울특별시	104	.	,	104	85	133	48
부산시	56	4	5	65	25	21	18
경기도	94	218	259	571	57	51	1 필요한 양호교사 수 900명
강원도	61	267	142	470	56	36	
충청북도	76	137	107	320	53	48	
충청남도	135	197	176	408	79	74	총 2,012명 현원 을 빼면 (918명) 증가되어야 할 수 1,094명
전라북도	105	269	98	472	100	97	5 2
전라남도	184	287	294	765	130	130	
경상북도	181	469	178	828	150	113	8 5
경상남도	109	464	199	772	107	119	
제주도	7	33	9	49	7	7	1

된다. 이렇게 많은 학교에 각각 양호교사를 다 배치하기란 당장 어려운 일이고 또 양호교사만으로 만족한 학교보건사업을 담당할수 없으므로 각 도에 학교건강관리소를 1個所式 설치하고 의사, 양호교사가 각 도에 있는 市, 郡을 순회하면서 학교보건사업을 담당하도록 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서울特別市를 제외한 180개 시·군에 각각 양호교사를 5명式 둘다면 900명이 필요하게 된다. 이를로 하여금 중·고등학교·대학교의 학교보건을 관리하도록 한다면 1人の 양

호교사가 평균 4—5개의 국민학교와 2個所의 中·高等·大學校를 맡게되는 셈이다. 그러면 全國에 必要한 產護教師의 數는 2,012명이고 현재 부족수는 1,094명이다.

셋째는 양호교사가 없는 학교에는 위생선생(first aid teacher)을 교직원 중에서 정하고 일정한 기간동안의 특수교육을 필하도록 하여 (지방별 혹은 학교 자체 교육가능) 구급처치를 행할수 있고 학교보건에 관한 전반사무를 볼수 있도록 할 것이다.

넷째는 양호교사의 자격문제이다.

現在는 일반 간호학교나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원의 면허를 가진者이면 양호교사가 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양호교사가 되기 위하여는 看護學校 또는 간호대학 卒業後 보건간호 전문교육을 일정한 기간동안(최저 1년간) 받은 다음에 양호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겠다.

다섯째는 양호교사를 爲한 In-service training 이 要求된다. 現職에 있는 양호교사의 대부분이 전문 교육을 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좀더 효과적인 사업을 거두기 위하여서는 school nurse 를 爲한 In-service training 을 문교부가 주관하여야 할 것이다.

3. 產業保健看護員 (Occupational Health Nurse)

가. 現況

1) 産業保健看護員의 現況은 제 4 표와 같다.

2) 産業保健關係法令(註 8)

(근로보건 관리 규칙 근로기준법 19

61. 9月 11日 공포자령 제 132 호)
제 2조(보건 관리자)에 의하면 1. 제 1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써 항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있어서 그 사용자는 보건관리자 1人을 두어야한다. 100人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事業으로써 보사부장관이 특히 必要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한다.

2. 전항의 사용자는 보건관리자 이외에 다음과 같이 보건관리에 필요한 요원(보건관리요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항시 사용하는 근로자수 보건관리에 필요한 요원수

의사	기타
1. 200명이하	1명이상 1명
2. 500명	1명 " 2명
3. 1,000명 "	1명 " 3명
4. 2,000명이하	1명이상 4명
5. 3000명 "	1명 " 5명
6. 3,000명을초과하는 경우	2명 " 6명

3) 제 3조(자격)에는 보건관리자는 醫師로써 근로보건에 관한 학력과 경험이 있는 者라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음과 같이 노동기준법 시행 세칙상의 사업장에 두어야 할 看護員數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산업보건관리 요원은 간호원 아닌자도 될 수 있다.

나. 問題點

첫째는 노동기준법에 보건관리요원중 몇몇은 保健看護員이라야 한다는 職制를 삽입하여야 한다. 산업보건관리자인 의사를 협조하여 근로자 및 그들의 가족까지도 천강관리를 말아야하는 보건관리요원이 간호원이 아닌 일반 中·高等學校를 나온 자라면 자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위험한 일이다. 그리고 산업보건에 종사하는 자들은

치료보다 예방을 더 중요시하게 다루어야 하는고로 임상간호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예방을 주로한 치료사업을 할수있는 보건간호원의 특수교육을 받은자를 배치시켜야한다.

둘째는 產業保健看護員의 人員確保이다. 전기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과 第4項 產業場看護員의 배치數를 참조하여 필요한 보건관리 요원수의 대부분을 보건간호원으로 배치토록 할 것이다. 노동청 기준과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대상사업장 수는 773個所이고 保健管理要員 배치목표수는 1,220명이다.

그중 현재 배치된 간호원이 129명이고 기타직원이 408명 모두 537명이다.

셋째는 산업보건간호원의 특수교육이 필요하다. 산업장 간호원은 보건간호의 한 분야이므로 간호학교나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원 면허소지자에게 보건간호 전문교육을 통하여도록 해야한다.

現在 노동청에서 行하고 있는 塗

1966. 4. 31. 현재
노동청 기준과
산업장에 배치된 간호원수

	대상사업장수	배치목표수	배 치 수	배 치 된 자 중 간호원 수
총 수	773	1,220	537	129
서 울	291	468	137	35
부 산	107	124	101	17
경 기	84	136	76	16
강 원	65	139	49	15
충 북	26	33	23	4
충 남	33	47	6	4
전 북	29	52	49	8
전 남	98	66	25	5
경 북	70	107	49	16
경 남	30	48	22	9
제 주	0	0	0	0

業場 看護員의 1個月 훈련은 In-service training이다. 이 과정만으로써는 보건간호원으로써의 임무를 다하기에는 不足함이 많다.

Public health nurse로써 인정을 받을 수있는 교육과 Occupational health nurse의 In-service training이 같이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III. 結 論

韓國의 保健看護事業이 英國·美國等의 先進國보다 훨씬 늦게 始作된 것은 歷史가 證明한다. 外國에서 開始한 保健看護事業이 始作한 곳은 1859年 英國의 Liver Pool 이라는 곳에서 William Rathbone에 依해 서이며 韓國에서는 1920年을 前後 하여 Miss E.T. Rosenbergev, Dr Hall, 한신광씨 그외 외국선교사들에 依하여 始作되었다. (註7) 即 外國先進國에 比하여 우리나라는 보건간호 사업을 約 60년이나 뒤 늦게 시작한 셈이다. 이런 點에 比해서는 現在 상당한 발전을 한 셈이다. 지금까지 제시한 保健看護事業의 여러가지 難問題는 事業을 늦게 始作한 우리나라에서는 궁연히 있을수 있는 문제이며 수치가 아니다. 이러한 難問題 속에서 일하는 우리 일꾼들은 inferiority complex 속에서 벗어나서 來日의 發展을 계획하고 기대하여야 한다. 다만 5년 혹은 10년의 긴 세월이 지난 후에도 오늘과 꼭같은 難問題가 다 그대로 남았다면 그때 서로의自身를 또는 保健看護事業을 탓해야 될 줄안다. 발전을 싫어하는 者는 아무도 없다. 다만 힘과 노력이 問題된다. 이렇게 벅찬 保健看護事業發展을 爲하여는 정부와 관계 기관은勿論 여러 會員任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일선에서 근무하는 보건간호원들의 품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一참 고 문 헌一

1. World Health Organization Technical Report Series No. 167, "Public Health Nursing.", 1959.
2. W.H.O. Technical Report Series No. 60, "Nursing Education", Feb. 1953.
3. 現行衛生關係法令集 "保健所法", 漢暦사 刊, 1956, p. 1
4. 경제기획원, 年末常住人口統計 19-65
5. Free man, "Public Health Nursing Practice" 3rd Edition, W. B. Saunders Company, 1963. P. 362.
6. 國立保健院發行, "保健行政", 196-5, p. 36
7. 大韓民國現行法令集, 第23編 教育 韓國法令編纂會發行, p. 19.
8. 大韓民國現行法令集, 第 28編
9. 國立保健院發行 "保健看護" 1964., p. 2

(93p. 에서)

2. Curtis, Text Book of Gynecology. Philadelphia & London 1947, W.B. Saunders company.
3. Willson, Beechmam, Formas, Carrington, St. Louis 1958, The C.V. Mosby Co.
4. Smith and Gips, Care of the Adult Patient, Philadelphia, Montreal 1963. (Med-Surgical Nursing) J.B. Lippincott Co.